

일련번호	1-1
------	-----

경기도교육청

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

제 목 물품선정위원회 미실시

관계기관 지도중학교

내 용

경기도교육청의 「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(2018.2.)」에 따르면 1회 납품 총액 기준으로 물품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구매 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물품을 선정해야 하며, 또한 조달3자단가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평가표 표준안(별지1호 서식)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업체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지도중학교는 2020학년도 5층 교실문 및 2층 탈의실, 행정실 출입문 교체 시 출입문을 조달3자단가 관급자재로 12,955천원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물품(업체)을 선정하여 진행한 사실이 있다.

【조치할 사항】

- ① 지도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관련자 2명에게 ‘주의’ 처분합니다.